



도시가스 공급규정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주특별자치도)

2018. 09. 01.

(주)제주도시가스

차

목 차 • 1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9
제17조 (검침)	19
제18조 (계량단위)	20
제19조 (사용량의 산정)	20
제5장 요금	22
제20조 (요금의 산정)	22
제21조 (가스요금의 용도 구분)	23
제22조 (요금 등의 수납)	23
제23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24
제24조 (10월단위 미만처리)	25
제25조 (이의 신청)	25
제26조 (요금계산의 정정)	26
제27조 (보증금)	26
제6장 공급	28
제28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28
제29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29
제30조 (공급중지)	29
제31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31
제7장 안전	32
제32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32
제33조 (사용시설의 위해 예방조치)	32
제34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33

제35조 (점검의 요청)	34
제3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34
제8장 기타	35
제37조 (문서보관)	35
제38조 (사용장소의 출입)	35
부칙	35
[별표]	37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37
[별표2] 시설분담금	38
[별표3] 가스요금표	39
[별표4]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	40
[별표5] 해제 수수료	41
[서식]	42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	42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시설변경 신청서	43
[별지 제3호 서식] 가스사용중지(폐지) 신청서	44
[별지 제4호 서식] 가스사용중지(해지) 신청서	45
[별지 제5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관 등 공사비의 수요자 부담 동의서	4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제주도시가스(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가스 사용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 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 봉사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

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101.3250kpa (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m³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2. “표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에 대하여 법 및 관계법규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으로 매월 산술 평균 열량을 말합니다.
3.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4.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5.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6.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7.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8.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9.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0.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 공급의 일시 중단을 말합니다.
11.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2.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3.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4.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 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15.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6.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상·하수도, 하천, 암반, 도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7.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검침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누출 점검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기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18.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19. “해약 또는 해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 및 요금채납의 문제점 발생 시 당사에 의한 계약해약 또는 해지를 말합니다.
20. “폐전(계량기철거)”이라 함은 계약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입배관의 도로구

간 임의지점을 절단 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철거”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용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 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명의 혹은 가스사용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장소는 당사로 합니다.

③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을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 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사용자의 명의로 신청 합니다.

⑤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의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중지 후 재사용 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용가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반환합니다.

④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변경계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에는 가스 수급과 공급 안정성, 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월 사용예정량이 10만 m^3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관 또는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 상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가 아니거나, 신청서 작성을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8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가스계량기 검정·교체비용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통해 당사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수요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법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② 제1항 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단,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원금} \times (2/100) \times (\text{체납일수} / \text{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 행위에 대해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 및 부당행위의 관계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와 온압보정장치 등의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 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의 5배
4. 계량기 이전 배관 불법 연결사용 : 계량기 등의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의 3배
6. 가스사용시설의 부정시공사용 : 시설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요금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동월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적용하며, 전년 동

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8.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수용가에서 계량기지침을 상이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지침 차이분을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일시 부과합니다.

제9조 (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와 별도의 계약사항이 없는 한 해지 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명시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위탁한 업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지예정일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해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지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지일로 합니다.

③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 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 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 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장소에서 가스를 사용중인 경우에는 해당 가스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⑥ 제8조 1항 3호에 따라 채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제10조(계약 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 (공급 전 안전점검) ①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시공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등 제반 구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①항 규정에 의한 공급전 안전점검 구비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1.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적합시공 여부

2. 그 밖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④ 당사는 제③항 1,2호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그 시설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스공급 전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에게 통보하여 시설의 개선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연료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최소 2일(영업일)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가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주 또는 가스 사용자가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이를 선정, 유료로 설치·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선정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유효기간 만기일이 도래하는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를 실시하며 수요자의 요청 혹은 당사의 필요에 의해 성능 검사를 거쳐 교체를 시공할 수 있으며, 소요될 비용을 별표4와 같이 매월 가스 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부과합니다. 단, 표준가스소비량의 증가 혹은 동 비용의 사전 부과·징수기간이 짧은 등의 사유로 가스계량기 검정·교체시의 실 소요비용이 기징수한 검정·교체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별도 부과·징수하여 검정·교체하도록 합니다.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⑤ 가정용 계량기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 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 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단, 원격지시부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선로 및 원격지시부 등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리드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당사가 교체하며, 계량기 외 리드스위치 연결 및 원격시스

템 지침조정 등 제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⑥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며,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온압보정장치) ①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사전에 당사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온압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9조 “사용량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제16조 (공사비) ① 당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한다)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가스 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③ 본관, 공급관(사용자 공급관은 제외) 및 지역정압기(전용정압기는 제외)의 설치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수요자가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④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공동주택 등에 있어서의 사용자 공급관, 내관 및 전용정압기, 계량기, 제3항에서의 수요자 부담 설치분등 포함)에 대한 신설, 증설,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투자 및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당사에 있습니다.

⑥ 가스사용자 혹은 타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7조 (검 침) ① 당사는 매월 1회 가스계량기의 검침을 실시하며, 검침일은 당사가 정한 매 정례일 전후로 하되 수급사정 등에 따라 월2회 또는 격월로 검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월 검침시의 사용료 산정은 검침된 양의 2분의 1을 월 사용량으

로 합니다. 한편,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별도 검침을 실시합니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③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계량기 지침이 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 고장(3개월 지침 미변동 포함) 또는 가스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임의기재 등으로 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확인 검침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단가를 적용합니다.

제18조 (계량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m^3)로 하며, 검침시 소숫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합니다.

제19조 (사용량의 산정) ①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계량기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거나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 (제8조 3항에서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에는, 전년 동

월 포함 전후 1개월 등 총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사용량 또는 계절을 감안한 월사용 추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합니다.

④ 당사는 가스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정식으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1) 속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2) 지동의 경우

$$V = \frac{V_1 \times (100 + A)}{100}$$

V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³)

V₁ :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 검침량(m³)

A :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를 초과한 가스계량기의 속동을 또는 지동을(%)

⑤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공급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압력·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합니다.

$$V = \frac{V_1 \times (10,332 + P)}{10,332 +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m^3)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mmAq)

V_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3)

⑥ 가스사용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가스사용량 산정은 온압보정장치에서 산출된 보정값을 적용합니다.

⑦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사전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의 가스사용량의 산정은 제①항의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제④항 또는 제⑤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제5장 요 금

제20조 (요금의 산정) ① 가스요금의 산정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도지사가 승인한 별표3의 가스요금표를 적용합니다.

② 가스요금은 원료비(도매사업자의 공급가격을 말한다.)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기본요금+사용량 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하며 당사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98.8.1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 가격을 통보받는 경우 당사는 가스요금에 자동 연동 조정 적용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③ 당사가 공급규정에 정해진 가스요금에 대해 원료비(도매요금) 변동외의 요인 또는 사유로 가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합니다.

④ 가스요금 변동시 당사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 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스요금 조정 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 요금에 대하여 가스요금의 조정일 기준으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의하여 사용량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⑤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제21조 (가스요금의 용도 구분) 가스사용자의 업종은 주택용, 영업용, 업무용으로 구분합니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2. 업무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영업용 요금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수납) ① 당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침 사용량 또는 인정사용량에 따라 별표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 및 별표4의 가스계량기 검정·교체비용 등 제 징수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당사 소정의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 가스사용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단, 가스 공급의 중지 또

는 폐지(해약 포함)가 있을 시에는 납부마감일을 조정하여 최종검침 직후 즉시 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③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라 제 징수금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특정 가스사용자에 대해 요금 등의 징수금 또는 제6조의 시설분담금 등의 부과를 일부 경감 혹은 유예·감면할 수 있습니다.

⑤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 납입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납입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납기 연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합니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분할 검침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또는 기업파산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기한 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는 가스 요금을 기존의 현금 납부 이외에 당사와 제휴된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⑥ 도지사는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10원단위 미만처리) 당사는 요금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금액을 절사합니다.

제25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수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어 가스사용자가 부과된 요금을 연체하였을 때에, 당사는 적정부과여부를 검토 후 요금부과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책정 부과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과다 책정분에 대해 가산금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당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5%를 적용합니다.

제26조 (요금계산의 정정) 당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 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월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사용량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제27조 (보증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 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제 징수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예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금과 동일한 담보물권 등으로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m³/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 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사업장의 수시변경 혹은 폐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가스 사용 여부가 불투명한 가스사용자
-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합니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7 제6항 가호(월사용예정량 산정방법)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 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기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당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30조에 의한 공급중지 혹은 폐지가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미부과 요금 포함) 및 연체가산금 등과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공급중지기간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가스사용자에게 보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중 1회 이상 연체 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미수의 부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⑥ 보증금(현금 예치시)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 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증기간이 1년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 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6장 공 급

제28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당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열량과 압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 : 표준열량 62,790KJ(15,000kcal/Nm³)
최저열량 60,697KJ(14,500kcal/Nm³)
2.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2,450Pa(250mmAq)
최저압력 980Pa(100mmAq)

단, 당사는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성분 : LPG(62.5%) + AIR(37.5%)
- ② 당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29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불가항력의 상황 및 타공사, 굴착공사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한 때
- ② 당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토록 합니다.
- ③ 당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합니다.
- ④ 제1항의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와는 무관한 당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공급중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하고 가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미납금액이 표시된 고지서, 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8조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5. 당사소유의 공급시설(가스사용자의 토지내 시설 포함)을 손상 또는 망실하여 당사에 중대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할 때
 7. 제33조 및 제34조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 받고도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당사가 가스계량기 검침을 위해 직접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
 9.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당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가스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악화 등(퇴출, 부도, 파업, 화재,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안전 및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할 수 없다고 당사가 판단 할 때에는 통지와

함께 즉시 가스공급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스공급을 중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중지 기간은 6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재건축 등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철거 최소 7일전에 도시가스 인입배관 마감시공에 대해 당사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미협의 또는 업무절차 미준수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당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그 사유가 된 사실을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고 공급의 재개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중지 후 해제 시에는 별표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사용상 위해 요인 등 특별한 현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③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하여 가스공급이 재개될 시에 당사는 이후 최초 가스요금 고지서에 가스 공급 중단 시기에 해

당하는 가스계량기 검정·교체비용 등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제7장 안 전

제32조 (공급시설의 안전책임) 당사는 법 및 안전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당사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당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3조 (사용시설의 위해 예방조치) ① 당사는 법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해 예방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합니다.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에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도합니다.
2.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설검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당사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단, 가스보일러 설치 시에는 1년에 1회 이상)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고 그 실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검사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필요한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합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 혹은 당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합니다.

⑤ 기존 공동주택(『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가스시설물에 대하여 당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1개월 이내에 동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등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해발생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관할 시장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시설 개선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4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의 누설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코크를 잠그고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 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항상 위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 타 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④ 가스사용자가 안전상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특수 소비기기(보일러, 온수기, 로 등)를 설치, 철거, 개조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⑤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⑥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35조 (점검의 요청) ① 가스사용자는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누출점검 및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요할 수 있으며, 이때 점검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는 제1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시 입회할 수 있으며, 당사는 그 결과를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점검결과 위해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히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제3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

제8장 기 타

제37조 (문서보관) ① 당사는 공급비용 산정자료 등 법 또는 도 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관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사용장소의 출입) 당사는 검침, 검사, 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직원 또는 당사의 위탁을 받은 당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9일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변경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변경 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 변경승인한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제14조 가스계량기)

등급	2	2.5	3	4	5	6	7	10	16	25	40
표준사용량 (m ³ /h)	2	2.5	3	4	5	6	7	10	16	25	40

※ 1시간당 표준 소비량이 41m³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 주택용 수요가

(1) 취사 전용 수요가 : 2m³/h

(2)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 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 가스 소비량

※ 주택용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표준소비량. 다만, 보일러가 시간당 증기발생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표준가스 소비량은 1톤의 열량을 2,635,983kJ(63만kcal/h)로 하고 도시가스 열량은 제28조에 규정한 표준열량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별표 2]

시 설 분 담 금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은 수요자의 총 표준가스소비량(m^3/h)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유량 등급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 가스계량기 2등급 : 50,000원
- 가스계량기 2.5등급 : 61,000원
- 가스계량기 3등급 : 72,000원
- 가스계량기 4등급 : 83,000원
- 가스계량기 5등급 : 94,000원
- 가스계량기 6등급 : 105,000원
- 가스계량기 7등급 : 116,000원
- 가스계량기 10등급 : 160,000원
- 가스계량기 16등급 : 226,000원
- 가스계량기 25등급 : 358,000원
- 가스계량기 40등급 : 886,000원
- 가스계량기 40등급초과시 : 886,000 + 초과등급당 22,000원
추가

※ 가스사용기기의 신·증설, 개체 등에 따른 표준가스 소비량의 증가시에는 상기 별표에 의거한 차액을 산출하여 부담함.

※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됨.(별도 부과)

[별표 3]

가 스 요 금 표

(제20조 요금의 산정)

구 분		기본요금 (원/전)	사용량 구간별 구분	사용량요금 (원/㎥)
주택용		750	월 10㎥까지	원료비+235.82
			월 11 ~ 30㎥까지	원료비+215.82
			월 31 ~ 50㎥까지	원료비+195.82
			월 51 ~ 100㎥까지	원료비+180.82
			월 101㎥이상	원료비+150.82
업 무 용	중앙 난방	—	월 300㎥까지 월 301㎥ ~ 3,000㎥까지 월 3,001㎥ 이상	원료비+235.82 원료비+210.82 원료비+195.82
	중앙 냉방		—	원료비+180.82
	영업용	1,800	—	원료비+235.82

※ 월 가스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사용량 단가 × 사용량)의 합계에 의해 산정됨.

※ 중앙냉방은 6월부터 9월까지 냉방용 기기 사용량에 한함.

※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됨(별도 부과)

[별표 4]

가스계량기 검정·교체 비용
(제14조 가스계량기)

계량기 등급	2등급	2.5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금 액	250원 /월	280원 /월	300원 /월	460원 /월	550원 /월	560원 /월
계량기 등급	7등급	10등급	16등급	25등급	40등급	
금 액	570원 /월	770원 /월	1,290원 /월	1,760원 /월	2,870원 /월	
계량기 등급	40등급 초과					
금 액	당해 설치 계량기에 따라 별도계상					

※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미포함됨 (별도 부과).

[별표 5]

해제 수수료
(제9조 해 약)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금 액	주택용 및 업무용 : 2,000 기 타 : 11,000

※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미 포함됨 (별도 부과).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공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⑥ 용 도		주택용, 업무용, 영업용		
공급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주)제주도시가스 대표이사 귀중				
※ 첨부서류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도시가스 시설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⑥ 변 경 내 용				
시 설 명	변 경 전		변 경 후	
배 관				
연 소 기 현 황				
계 량 기				
기 타				
⑦ 용 도				
공급규정 제 5 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주)제주도시가스 대표이사 귀중				
※ 첨부서류 :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가스사용중지 해지·폐전·철거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⑥ 요 청 일 자				
⑦ 중 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⑧ 사 유				
공급규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중지 해지·폐전·철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주)제주도시가스 대표이사 귀중				

가스사용중지 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상 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시		
⑥ 가스사용중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⑦ 해 제 요 청 일		공급규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중지 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주)제주시가스 대표이사 귀중		

도시가스 공급관 등 공사비의 수요자 부담 동의서

우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하여 공급관 등의 설치 및 공사비 일부를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준수의 조건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할 것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공사구간 :
- 공사기간 :
- 가스사용 신청지역 및 신청 가구수 : 의 가구
- 수요자 부담액 :
- 특기사항 :

년 일 일

신 청 인 (인)

(주) 제주도시가스 대표이사 귀중

※ 첨부 : 신청자 명단

※ 첨 부 : 신청자 명단

번 호	성 명	주 소	서명·날인